



“꿈이 자라 60년 - 빛이 되어 100년!”

회의록



결	부의장	의장
재		

회의명	제1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시	2024.11.20.(수) 12:00	장소	도익서홀(M402)
안건	1. 안건번호 9-19-01 제17차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및 처리의 건		
참석의원	김태순 의장, 김영준 부의장, 강선주 평의원, 박진수 평의원, 이승환 평의원, 김영림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황세인 평의원 (이상 8명)		
불참의원	이은정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민운기 평의원, 오종탁 평의원(이상 4명)		
간사	고광언		


회의내용

1. 선원보고 :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재적 평의원 12명 중 출석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김태순 의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안건 심의

가. 안건번호 9-19-01 제17차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및 처리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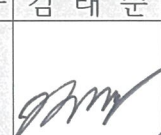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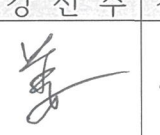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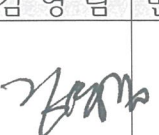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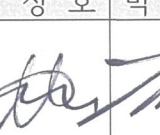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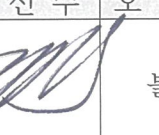
- 의장이 제17차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 간사가 회의자료에 서면으로 법률자문 의뢰서, 법무법인 향촌(대표변호사 방이엽), 함께하는 법률사무소(김평수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한 결과를 보고하다.
- 김영준 부의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직접 질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사립학교법은 큰 틀을 정한 것이고 반드시 대학평의원회 자문서를 제출한다는 구체적인 내규가 없다면 보고 방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흔히 말하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보이며, 내규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맞을 듯하다는 조언을 받았으며, 자문했던 예산(안)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심의 값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다르게 보고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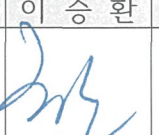
같은 것인지와 금액의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이 기획예산처장을 출석하게 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나온 자문 내용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를 질의하다.
 - 양재찬 기획예산처장이 제17차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평의원님들의 자문 말씀도 듣고, 평의원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신 총학생회장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히 들은 내용이므로 변경 없이 구두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예산소위에 출석하여 자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대학평의원회의에 제출했던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도 변경없이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제17차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과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자료를 요청하여 간사각각의 자료를 제출하니, 의장이 각 자료가 내용 변경 없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다.
- 의장이 법률자문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한 결과에 대하여 들었고,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과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2024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변경된 사항 없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니 제17차 회의록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을 요청하다.
- 김영준 부의장이 발언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제1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채택하자고 동의하고 황세인 평의원이 재청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으니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의장이 평의원들이 2024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의견을 SNS(카카오톡)로 제출하시면 이를 종합하여 총장(기획예산처 예산과)에게 전달하자고 제안하니 평의원들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4. 폐회

- 회무를 마쳤으니 폐회하자는 황세인 평의원의 동의와 박상호 평의원이 재청한 폐회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2시 54분이었다.

위원	의장 김 태 순	부의장 김 영 준	평의원 강 선 주	평의원 김 영 립	평의원 민 운 기	평의원 박 상 호	평의원 박 진 수	평의원 오 종 탁
서명					불참			불참

위원	평의원 이 성 호	평의원 이 승 환	평의원 이 은 정	평의원 황 세 인
서명	불참		불참	